

의 안 번호	1470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8. 23.(목)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8. 8. 24.(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8. 9. 11.(화)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근거법규

-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
-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일괄개정 조례 목록

구분	조례명	소관부서	비고
제1조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과	
제2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제3조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보건행정과	